

## 1 코로나19 피해기업 앞 긴급 수출안정자금 지원 확대(‘20.7월~)

- (지원총량 확대 : 1,000억원→2,000억원) 현재 1,000억원(‘20.4.15부터 시행)의 94%를 지원 완료, ‘20.7.8자로 2,000억원으로 확대
  - ※ 부산지역 : 38개사 41억원 지원 완료(‘20.6월말)
- (기업당 지원한도 : 2억원→5억원) 수출실적 연동 한도 부여, 기존 지원기업도 추가 수혜 가능
- (유관기관 공조 지원) 신·기보, 무역협회, 하나은행 등과의 공동 지원 프로그램 시행중
  - (신·기보 공동보증) 신·기보에서 5억원 이내 先지원 후, 무보에서 3억원 이내 추가 지원 (기업당 최대 8억원)
  - (KITA 무역진흥기금) 무역협회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3억원 이내 보증 지원
  - (하나은행 협약보증) 하나은행 추천, 소재·부품·장비 수출기업 및 신흥시장 수출기업 앞 최대 25억원 이내 우대 지원

### 【 긴급 수출안정자금 지원 확대 내용 】

구 분	기 존	확 대
지원총량	1,000억원	2,000억원
프로그램	(신 설)	① 수출실적 연계 한도 (업체당 최대 2억원)
		② 신·기보 유동성위기 수출기업 공동보증
		③ 무역협회 KITA 무역진흥기금
		④ 하나은행 수출입 연계 금융지원

## ② 코로나19 피해기업, 한도 감액 없이 만기 연장(‘20.4월~)

- (무역보험 종목) 피해가 큰 미·중·EU 등 33개국과 거래 시 1년간 보험한도 무감액 연장 (부산지역 1,076개사 수혜)
- (무역보증 종목) 보증 이용기업에 대해 1년간 한도 무감액 연장 (부산지역 264개사 수혜)

### 【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감액 연장 세부내용 】

구 분	지원대상	지원내용
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	수출기업	· 주력시장(미국, 캐나다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영국, EU 27개국)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
수출신용보증(선적전) 무감액 연장	수출중소	· 수출신용보증(선적전) 한도 감액없이 연장

## ③ 부산 소재 중소기업 앞 일괄 단체보험 제공(‘20.6월~)

- ‘20.6.15자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4,443개사에 일괄 단체보험 시행(부산시는 보험료 지원, 무보는 보험계약관리)
- 업체별 보상한도 : 수출실적 연동 2만불~5만불

### ※ 단체보험 시행효과

☞ ‘14년 단체보험 최초시행 이후, ‘19년까지 총 41개사가 12.4억원의 보험금 수령(보험료의 3.2배)

### 【 부산시 단체보험 운영성과 】

구 분	‘14년	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‘19년	합계
이용업체 수	111	169	177	420	629	754	2,260
보험료 지원액(백만원)	21	31	40	67	103	128	390
보험금 지급건수	1	3	7	7	8	15	41
보험금 지급액(백만원)	51	80	114	264	271	457	1,237

※ ‘20년 부산시 지원 보험·보증료 예산 : 보험료 7억원, 보증료 3억원

**④ 수출 채권 조기유동화 상품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(‘20.1월~)**

- 중소·중견기업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

- 코로나19로 수입자 결제기간이 장기화되는 점 감안

※ 부산지역 : 20개사 279억원 지원 완료(‘20.6월말)

**【 수출 채권 조기유동화 제도 개요 】**

구 분		수출신용보증(선적후)	수출신용보증(매입)
대상거래	결제조건	2년 이내 신용장/무신용장	1년 이내 무신용장
	거래형태	일반, 위탁가공무역	일반, 위탁가공 및 중계무역
보증료 납부		매입 건별로 납부	연 1회 선납
통지 의무		통지의무 존재	통지절차 생략
단기수출보험 가입 의무		가입 필수	가입 선택

**⑤ 보험·보증료 50% 할인 및 신용조사 무료 제공(‘20.4월~)**

- (보험·보증료 할인) 20.4.15자 이후 선적건부터 적용
- (신용조사 무료 제공) 신규거래선 발굴 시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수수료를 5회 면제

**⑥ 대금 결제 지연에도 수출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(‘20.3월~)**

-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바이어가 대금 결제를 지연해도 추가수출이 가능하도록 완화

※ ‘20.3.1자 이후 선적건에 대해 추가수출 허용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